

2026년도 제1회 광주소녀원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법무부 광주소녀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광주소녀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응시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무 (정신건강의학)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계약일로부터 2년	의무과(광주소녀원)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채용일부터 2년간 계약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의무 (정신건강의학)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보호·위탁소녀 건강진단 및 진료 ○ 보호·위탁소녀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진료 및 심리치료 ○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 권 위임규칙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적용범위)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직 급
의무 (정신건강의학)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7. 2.) 기준으로 판단
※ 응시자격요건 착오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면허증의 범위

- '면허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면허증'을 말하며,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면허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면허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의 경력은 개업의(본인)에 한해서 인정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① 경력(재직) 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①, ② 모두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일정	'26. 6. 5.(금) ~ 6. 19.(금)	'26. 6. 8.(월) ~ 6. 19.(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6. 8.(월) ~ 6. 19.(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주소

기관명	주 소	문의전화	담당자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273-3 (우 62207)	062-958-7907	기현석

※ 결봉투에 “응시원서 재증” 이라고 표기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연번	서류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9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1부
	10 공정채용확인서 1부
	11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12 주민등록초본 1부
	13 경력 증명서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14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7. 10. ~ 7. 20.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8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적용(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임기제의 급여는 연봉과 연봉 외 급여로 구분함
 - 연봉 :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 연봉액*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6.3.1.시행) 제37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2항,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처 예규, '26.1.22. 시행)에 따라 법무부의무관은 연봉특례 대상 직위에 해당, 신규임용되어 최초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별도 상한 없이 연봉 책정

* 기준 연봉액

구분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기준 연봉액	봉급연액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12개월
	정근수당	월봉급액 * 10% ~ 100%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0원 ~ 100,000원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개월
	명절휴가비	월봉급액 * 120%

※ 월봉급액은 의사 면허 취득 후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대입하여 산출함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의료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가산금, 특수지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주소년원 행정지원과(062-958-790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면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무 (정신건강의학)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광주소녀원 의무과 (광주광역시)
주요 업무		○ 보호·위탁소년 건강진단 및 진료 ○ 보호·위탁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진료 및 심리치료 ○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문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및 유연한 사고능력		
필요 지식		○ 의료·보건위생 지식 ○ 상담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지식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 소년원생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통 능력 ○ 소년원 현안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관리 능력		
응시 자 격 요 건	관련분야 : 정신건강의학과			
	응시 요건	○ (자격증+경력)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정신건강의학과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등)은 최종시험예정일(면접 시험일) 현재를 기준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8호)
9.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10. 공정채용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11. 의사면허 자격증 사본 1부
12. 주민등록초본 1부
13. 경력증명서(별지서식 제11호) 1부

응시원서 (원본)

광주소녀원장 귀하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광주소녀원 의무사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의무사무원(일반임기제)/의무직	
응시자격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불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도 제1회 광주소녀원 의무사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의무사무원(일반임기제)/의무직	
응시자격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날 당일 광주소녀원 행정지원과에 30분전까지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의무사무원(일반임기제)/의무직
- ② 응시자격 : 의사면허증 + 관련분야(정신건강의학과) 근무경력 2년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의무사무관은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업무 이해도, 업무추진전략, 추진실적 등 작성
- 분량은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과 서명 포함

성명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광주소년원에서 시행하는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광주소녀원장 귀하

광주소녀원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광주소년원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인)

광주소년원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광주소년원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 근무기관 발행 양식 제출 가능함. 단, 아래의 양식에 기재된 내용 필수 기재 바람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기제)	비고
	입사일	퇴사일					
	(예시) 2020.6.30.	(예시) 2024.12.31.				주당 근무시간 (주 40시간)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직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건설기계운전, 舊 중장비운전) 분야

② 근무형태 : 주당근무시간 기재, 예시) 주 40시간 근무 등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